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연월일	20 . . (제 회)	

통합방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0 0 0 (국방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통합방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가. 중앙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방식 수정(안 제7조)

중앙 통합방위협의회를 천재지변 등으로 소집이 제한되는 경우 ‘화상회의’ 방식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

나. 경계태세 1급 발령시 합동보도본부 운용 근거 마련(안 제20조)

합동보도본부 운용시기를 경계태세 1급 발령 시까지 확대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

다. 국가중요시설 방호인력 명시(안 제32조)

국가중요시설 방호인력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여 혼선을 방지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통합방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통합방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3항을 신설하여 종전의 제2항을 제3항으로 이동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의장은 천재지변 등으로 회의를 정상적으로 소집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원과 그 밖에 법 및 이 영에 따라 회의에 출석하는 사람(이하 “출석자”라 한다) 이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되는 화상회의의 방식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. 이때 위원 및 출석자는 같은 장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.

제20조제2항 중 ‘선포 구역의 작전지휘관’을 ‘선포 구역 및 경계태세 1급 발령 시 관할지역의 작전지휘관’으로, ‘설치한다’를 ‘설치할 수 있다’로 한다.

제21조제1항제1호가목의 ‘연대장급’을 ‘여단장급’으로 한다.

제32조를 다음과 같이 전면 수정한다.

제32조 (국가중요시설의 경비·보안 및 방호)

① 국가중요시설의 관리자는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및 방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필수 인원으로 포함하는 자체방

호인력을 운용하여야 한다.

1. 청원경찰

2. 특수경비원

3.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화기(個人火器)를 휴대 및 사용할 수 있는 인원

② 국가중요시설의 경비·보안 및 방호를 위하여 국가중요시설의 관리자(소유자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, 시·도경찰청장, 지역군사령관 및 대대 단위 지역책임부대장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

1. 관리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업무

가. 제1항에 따른 자체방호인력, 장애물 및 과학적인 감시 장비를 통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자체방호계획의 수립·시행. 이 경우 자체방호계획에는 관리자 및 특수경비업자의 책임하에 실시하는 통합방위법령과 시설의 경비·보안 및 방호 업무에 관한 직무교육과 개인화기(개인화기)를 사용하는 실제의 사격훈련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나. 국가중요시설의 자체방호를 위한 통합상황실과 지휘·통신망의 구성 등 필요한 대비책의 마련

다. 방호인력 및 시설운영인력에 대한 화생방 방호물자의 확보 등 필요한 대비책을 강구한다.

2. 시·도경찰청장 및 지역군사령관의 경우에는 관할 지역 안의 국가중요시설에 대하여 군·경찰·예비군 및 민방위대 등의 국가방위요소를 통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방호지원계획의 수립·시행. 이 경우 경찰

은 경찰서 단위의 방호지원계획을 수립·시행하고 군은 대대 단위의 방호지원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3. 관리자, 대대 단위 지역책임 부대장 및 경찰서장은 국가중요시설의 방호를 위한 역할분담 등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, 자체방호계획 또는 대대 단위나 경찰서 단위의 방호지원계획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서로 통보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7조 (중앙협의회의 소집 등) ① (생략) ② <u>(제3항으로 이동)</u>	제7조 (중앙협의회의 소집 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<u>의장은 천재지변 등으로 회의를 정상적으로 소집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원과 그 밖에 법 및 이 영에 따라 회의에 출석하는 사람(이하 “출석자”라 한다) 이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화상회의의 방식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. 이때 위원 및 출석자는 같은 장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.</u>
<u><신 설></u> 제20조 (합동보도본부의 설치기준) ① (생략) ② 지역군사령관, 함대사령관 또는 시·도경찰청장은 통합방위사태 <u>선포 구역의 작전지휘관</u> 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지역 합동보도본부를 <u>설치한다.</u> ③ (생략)	<u>③ (중전의 제2항과 같음)</u> 제20조 (합동보도본부의 설치기준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 <u>선포 구역 및 경계태세 1급 발령 시 관할지역의 작전지휘관</u> ----- ----- <u>설치 할 수 있다.</u> ③ (현행과 같음)

